

# 울산광역시북구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제1311호 2021. 10. 7(목)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18호[도시관리계획(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고시] 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22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23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 ..... 3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218호[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219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220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20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 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2, 행정7122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218호

# 도시관리계획(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.

2021. 10. 7.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I. 도시관리계획(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조서

####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
변경	152	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, 화봉동 일원	1,438,370.8	감)4	1,438,366.8	

####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152	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A = 1,438,370.8㎡ → 1,438,366.8㎡(감 4㎡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</li> </ul>

### II. 관계도서

※ 도시관리계획(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22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점용·사용허가 연월일 : 2021. 10. 6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인공구조물 설치(도시가스 배관 매설)
3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935-173번지 일원
  -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00-1번지 일원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 - 가. 면 적
    - 1) 일시: 361.8m<sup>2</sup>
    - 2) 영구: 43.78m<sup>2</sup>
  - 나. 기 간
    - 1) 2021. 10. 11. ~ 2021. 11. 9.
    - 2) 2021. 11. 10. ~ 2025. 5. 31.
5. 점용·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
 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223호

## 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		
주소	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-10번지		
점용 위치	○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 935-216번지 일원	하천의 명칭	○ 무룡천
점용 내용	○ 도시가스 배관매설	점용 면적	○ 일시: 205.2m <sup>2</sup> ○ 영구: 25.08m <sup>2</sup>
점용 기간	○ 일시: 2021. 10. 11. ~ 2021. 11. 9. ○ 영구: 2021. 11. 10. ~ 2025. 12. 31.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1218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·폭행, 성희롱, 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신고의무, 지원사항,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(안 제6조~제8조)
- 라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, 불이익 조치 금지 등(안 제9조~제13조)

#### 3. 관계법령

- 가.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나.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
#### 4. 입법문안 : 붙임 참조

#### 5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민원지적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출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민원지적과

2) 전화번호 : 052)241-7562, 팩스번호 : 052)241-7569

3) 전자우편(E-mail) : litera@korea.kr

#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##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·폭행, 성희롱, 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민원담당공무원 등”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울산광역시 복구 소속 공무원

나.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

다.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

라.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
마.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·처리하는 사람

2. “안전시설”이란 민원인의 폭언·폭행, 성희롱, 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 등(이하 “악성민원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·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

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2.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
-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신고의무)**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,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.

**제7조(지원 사항)**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심리상담
2. 진료비, 약제비 등 의료비
3.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

4. 법률상담,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
5.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
6.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
7.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
8.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)**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.

1.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
2.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·운영
3. 자동녹음 전화 설치(착신 전 폭언·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)
4. 민원실 내 청원경찰·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
5.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
6.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

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민원실에 폭언·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
2. 민원대에 폭언·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시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**제9조(재정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.

**제10조(지원 방법)**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**제11조(지원 신청)**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지원 결정)**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불이익 조치 금지 등)**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**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**

지원 구분	근거	지원 한도	세부기준
심리상담	제7조제1호	전문기관 위탁운영 등	
의료비	제7조제2호	예산의 범위	1. 병원진료비, 입원비 2. 정신의학 관련 진료 3. 약제비
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	제7조제3호	4시간	피해상황,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
법률상담 및 소송 등	제7조제4호	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	
피해의 예방·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	제7조제5호	5일 이내	예산,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
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	제7조제6호	5일 이내	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
그 밖의 사항	제7조제7호	예산의 범위	
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	제8조	예산의 범위	

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원”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#### 가. 일반민원

- 1) 법정민원: 법령·훈령·예규·고시·자치법규 등(이하 “관계법령등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·허가·승인·특허·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·대장 등에 등록·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
- 2) 질의민원: 법령·제도·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
- 3) 건의민원: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
- 4) 기타민원: 법정민원, 질의민원,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·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

- 나. 고충민원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

### 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담당자의 보호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·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1219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“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”의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」 제1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(청년정책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과 실무분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등의 지원)

#### 3. 근거법규
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
-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」 제12조

#### 4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참조

## 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6일 18: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경제일자리담당관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나. 제출방법

- 1) 전자우편 : [younga62@korea.kr](mailto:younga62@korea.kr)
- 2) 우편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
- 3) 팩 스 : 052-241-7709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(052-241-7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, 실무분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) ①·②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은 청년정책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, 실무분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」

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)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·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1220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“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”의 구성인원 확대 및 실무분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 규칙일부를 보완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(안 제3조)
- 실무분과 구성, 운영지침 수립, 업무 추진 실적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#### 3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
-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」 제3조 및 제7조

#### 4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참조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6일 18: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경제일자리담당관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# 나. 제출방법

- 1) 전자우편 : [younga62@korea.kr](mailto:younga62@korea.kr)
- 2) 우편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
- 3) 팩 스 : 052-241-7709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(052-241-77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명”을 ‘30명’ 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.

③ 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.</u></p> <p>③ <u>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 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」

**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)**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·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」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,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**제7조(회의 등)**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.

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·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,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.

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